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
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윤호중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행정안전부에 산불 재난 대응체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(5급 1명)을 증원하되, 산림청 공무원으로 충원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2026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기획예산처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 및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6. 0. 00. ~ 0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

음

대통령령 제 호

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

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9조제3항 전단 중 “1명(5급 1명)은 산림청”을 “2명(5급 2명)은 산림청”으로 한다.

별표 1 중 총계 “1,702”를 “1,703”으로 하고, 일반직 계 “1,672”를 “1,673”으로 하며, 3급 또는 4급 이하 “1,601”을 “1,602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신 · 구 정원 대비 표

[별표 1]

행정안전부 공무원 정원표(제59조제1항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<u>1,702</u>	<u>1,703</u>	+1
·	·	·	
·	·	·	
일반직 계	<u>1,672</u>	<u>1,673</u>	+1
·	·	·	
·	·	·	
3급 또는 4급 이하	<u>1,601</u>	<u>1,602</u>	+1
·	·	·	
·	·	·	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	
연 락 처	(044) 205 - 2387